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3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미상각신계약비*’가 보험회사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삭제(법 제2조제14호 개정사항)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설계사 수당 등 모집비용

나. 제·개정 내용

- 보험회사 자산 항목 중 “미상각신계약비”를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IFRS17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업법령을 개정하여 혼선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 허용(안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22.11월 발표) 후속조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집규제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 확보·유지방법에 음성녹음 외에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방법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화상통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완화 (안 제46조)

가. 제·개정 이유

-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예: 주택화재보험 -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 - 충돌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구충제

※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접목된 건강증진형 상품(예: 스마트워치)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만원 한도 내 제공 가능

나. 제·개정 내용

- 보험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는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 및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관련 조문 정비(안 제50조, 제51조)

가. 제·개정 이유

- 「보험업법」상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삭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개정사항), 자산운용 한도비율 초과시 예외 규정 개정(법 제107조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산운용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은 자산운용비율 규제시 일반계정과 합산(법 제106조 단서 개정사항)토록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등 자산운용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은 자산운용비율 규제시 일반계정과 합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신설(법 제 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4)됨에 따라 발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금융 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건부자본증권의 구체적인 발행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관련 홍보·포상금 지급 업무 허용(안 제84조)

가. 제·개정 이유

-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나, 법령상 한정된 업무범위로 인해 업무수행에 한계

* 보험업법령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1)보험회사간 업무질서 유지, 2)보험상품 비교·공시, 3)통계수집 및 4)위탁업무 등을 규정

- 이외 업계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 등 개인 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 제·개정 내용

-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예방·근절 관련 홍보,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예방 관련 역할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선임계리사 관련 제도 정비(안 제95조 내지 제92조의4, 제96조, 별표9)

가. 제·개정 이유

- IFRS17 및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중요성과 책임성이 증가하므로 그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의 인력, 업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선임계리사 관련 기존 시행령 규정의 상향입법 및 과태료 신설(법 제181조의2, 제184조의2 등) 등 「보험업법」 개정사항도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일부 조문 삭제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선임계리사 업무의 책임성 강화 및 지원조직 운영 내실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안 제101조)

가. 제·개정 이유

- 자율규제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다른 전문자격 사례(공인회계사 등록: 공인회계사회, 세무사 등록: 한국세무사회)와 동일하게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는 보험계리사회 등에서 시행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현행 금감원에서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계리사회의 자율규제 등 역할 및 기능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정(안 별 표9 제2호 처목)

가. 제·개정 이유

- 법인보험대리점(GA)은 경영실적 등을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1천만원 이하)이나, 공시 미이행 GA의 대다수가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과태료 납부능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

나. 제·개정 내용

-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재수준을 합리화하여 감독행정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